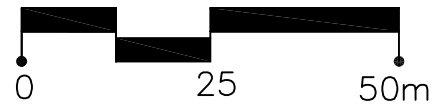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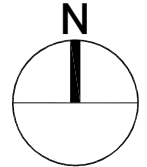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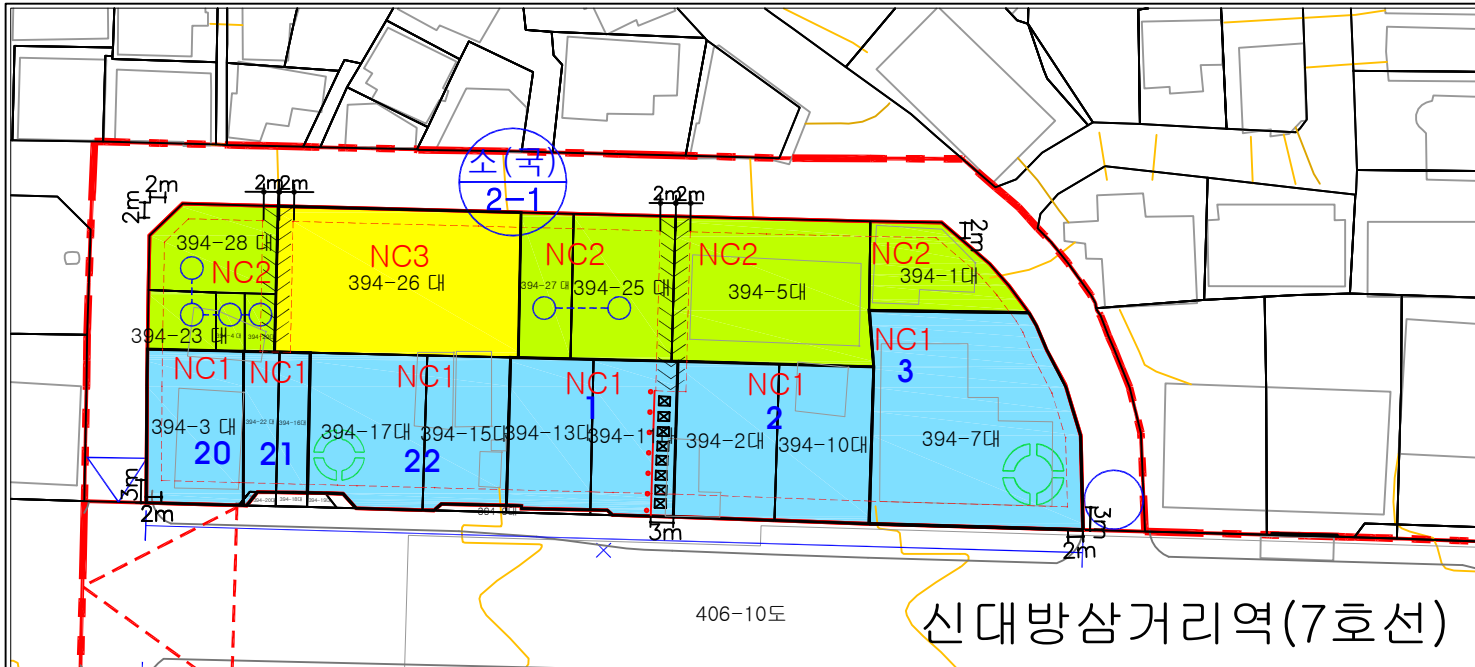


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
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
 결정(경미한 변경)도

SCALE
 S=1:1,000



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-호
 2015.8.27.
 작성자 지방시설서기 한효정(인)
 확인자 지방시설주사 김용태(인)



406-10도

신대방삼거리역(7호선)

범례

	지구단위계획구역		특별계획구역					
	건축한계선		차량출입금지구간					
	한시적 건축한계선		필지분할가능선					
	벽면한계선		도시계획도로(대로이상)					
	지 적 선		도시계획도로(중로이하)					
	획 지 선		공공청사(소방파출소)					
	공동개발(권장)		공공공지(위치지정)					
	공동개발(지정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허용용적률</td> <td>최고높이</td> </tr> <tr> <td>기준용적률</td> <td>불허용도</td> </tr> <tr> <td>건폐율</td> <td>권장용도</td> </tr> </table>	허용용적률	최고높이	기준용적률	불허용도	건폐율	권장용도
허용용적률	최고높이							
기준용적률	불허용도							
건폐율	권장용도							
	획지간공동개발(권장)							
	공공보행통로							
	쌈지형공지(권장)							
	침상형공지(권장)							
	보차혼용통로							
	보행자우선도로							
	일방통행							

건축기준

근린상업지역			준주거지역		
NC1 (간선부)	500%이하 300%이하	70M이하	SR1 (간선부)	360%이하 250%이하	70M이하
	60%	A 1		60%	C 3
NC2 (이면부)	450%이하 300%이하	40M이하	SR2 (이면부)	360%이하 250%이하	40M이하
	60%	B 2		60%	D 4
SD1 이개발지 특별계획구역	500%이하 300%이하	80M이하	SD2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	360%이하 250%이하	80M이하
	60%	A -		60%	C -

건축물 권장용도에 관한 계획

구분	전 총 권장 용도	
근린상업지역	1 (간선가로변) <small>건축지역 권장용도</small>	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, 운동시설 중 제1,2층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	2 (이면부) <small>건축지역 권장용도</small>	판매시설 중 상점, 소매시장
준주거지역	3 (간선가로변) <small>건축지역 권장용도</small>	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, 판매시설 중 상점, 소매시장
	4 (이면부) <small>건축지역 권장용도</small>	판매시설 중 상점

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

구분	전 총 불허용도
A <small>(근린상업지역 간선가로변)</small>	·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횡단, 종합 여객시설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
	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	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B <small>(근린상업지역 이면부)</small>	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	·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터미널 및 횡단, 종합여객시설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
	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C <small>(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)</small>	·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터미널 및 횡단, 종합여객시설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
D <small>(준주거지역 이면부)</small>	·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